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 (제 회)	

콘텐츠산업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콘텐츠산업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26년 2월 1일 시행 예정인 「콘텐츠산업진흥법」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관련 개정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연계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확대 및 기능 강화 : ▲ [신설] 제29조의2(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제29조의3(위원의 신분보장), 제29조의4(조정부) 신설, 제30조(분쟁의 조정), 제33조(조정의 효력) 개정, 제33조의2(합의권고), 제33조의3(직권조정결정), 제33조의4(분쟁 조정의 특례), ▲ [개정] 제34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3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3. 주요내용

- 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0조의2~제30조의5)
- 나.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안 제30조의6)
- 다. 집단분쟁조정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0조의7~제30조의13)
- 라. 조정의 거부 및 중지 관련 사항 개정(안 제31조~제31조의2)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타 : 1) 입법예고 : 실시 예정
2) 행정규제 : 협의 예정

대통령령 제 호

콘텐츠산업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콘텐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1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위원장) ①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조정위원장”이라 한다)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조정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의3(조정위원회의 운영) ① 조정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조정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조정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정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을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장이 정한다.

제30조의4(조정위원회의 사무국) ① 법 29조 제3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접수·상담
2. 분쟁조정 신청 사안의 조사·확인 및 관계자 의견 청취
3. 분쟁조정 신청 사안의 인과관계 규명 및 피해액 산정에 관한 업무 지원
4.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조정안 마련 지원
5. 분쟁조정에 따른 피해 구제 및 법률적 지원
6. 분쟁조정에 관한 제도 조사 및 연구
7. 분쟁조정에 관한 교육 및 홍보
8. 분쟁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협력
9. 그밖에 분쟁조정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조정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인력을 둔다.

제30조의5(분과위원회) 법 제29조의2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장이 정한다.

제30조의6(조정부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조정부는 조정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하의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신청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의 조정위원회 위원이 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둘 이상의 조정부를 두는 경우에는 조정위원장이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담당할 조정부를 지정한다.

④ 조정부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0조3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단, 제30조의3 제3항 단서는 제외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부”로, “조정위원장”은 “조정부의 장”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장이 정한다. 제30조의7(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대상) 법 제33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을 말한다.

1. 피해를 입은 이용자의 수가 다음 각 목의 이용자를 제외하고 50명 이상일 것

가. 콘텐츠사업자와 개별적으로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완료한 이용자

나. 같은 사안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 중인 이용자

다. 해당 피해에 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이용자

2.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것

제30조의8(집단분쟁조정의 신청) ①법 제33조의4제1항에 따른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의 의뢰나 신청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에 따라 피해신고된 사안에 대하여 피해구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의4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30조의9(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①법 제33조의4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4일 이상을 말한다.

② 법 제33조의4제2항 후단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공고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0조의10(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신청) ①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이용자나 콘텐츠사업자가 법 제33조의4제3항에 따라 추가로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로 참가하려면 제30조의9제1항의 공고기간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참가신청을 받으면 제1항의 참가신청기간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참가인정 여부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제30조의11(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보상계획) 법 제33조의4제5항에 따라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권고의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30조의12(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 ①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된

후 제30조의7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이용자는 당사자에서 제외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30조의7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에 대하여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고 나면 그 후 당사자 중 일부가 같은 조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외됨으로써 같은 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더라도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의13(집단분쟁조정을 위한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단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장이 정한다.

제31조의 제4호를 삭제하고, 제7호 “그 밖에 신청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인정되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그 밖에 신청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등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장이 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분쟁조정 신청 사실 등의 통지)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의 소 제기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受訴法院)에 알리고 소송절차 중지 여부를 문의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분쟁조정 신청일

3.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소송사건의 번호

② 분쟁당사자는 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중지된 사건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 법원에 알려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2. 조정절차의 종료 사유

3. 조정의 결과(조정이 성립하거나 직권조정결정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4. 소송사건의 번호

부 칙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장 분쟁조정	<삭 제>
<신 설>	제6장 분쟁조정
<신 설>	제30조의2(위원장) ①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조정위원장”이라 한다)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 설>	② 조정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30조의3(조정위원회의 운영) ① 조정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조정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조정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신 설>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정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 또는 참고인을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장이 정한다

제30조의4(조정위원회의 사무국) ① 법 29조 제3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접수·상담
2. 분쟁조정 신청 사안의 조사·확인 및 관계자 의견 청취
3. 분쟁조정 신청 사안의 인과관계 규명 및 피해액 산정에 관한 업무 지원
4.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조정안 마련 지원
5. 분쟁조정에 따른 피해 구제 및 법률적 지원
6. 분쟁조정에 관한 제도 조사 및 연구
7. 분쟁조정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신 설>

<신 설>

8. 분쟁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협력

9. 그밖에 분쟁조정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조정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인력을 둔다.

제30조의5(분과위원회) 법 제29조의 2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장이 정한다.

제30조의6(조정부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조정부는 조정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하의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신청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의 조정위원회 위원이 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둘 이상의 조정부를 두는 경우에는 조정위원장이 분쟁조정 신청 사건을 담당할 조정부를 지정한다.

④ 조정부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0조3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단, 제30조의3 제3항 단서는 제외

<신 설>

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부”로, “조정위원장”은 “조정부의장”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장이 정한다.

제30조의7(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대상) 법 제33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을 말한다.

1. 피해를 입은 이용자의 수가 다음 각 목의 이용자를 제외하고 50명 이상일 것

가. 콘텐츠사업자와 개별적으로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완료한 이용자

나. 같은 사안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 중인 이용자다. 해당 피해에 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이용자

2.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것

<신 설>

<신 설>

<신 설>

제30조의8(집단분쟁조정의 신청) ① 법 제33조의4제1항에 따른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의 의뢰나 신청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에 따라 피해신고된 사안에 대하여 피해구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의4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30조의9(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① 법 제33조의4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 이상을 말한다.

② 법 제33조의4제2항 후단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공고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0조의10(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신청) ①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신 설>

<신 설>

아닌 이용자나 콘텐츠사업자가 법 제33조의4제3항에 따라 추가로 집단 분쟁조정의 당사자로 참가하려면 제30조의9제1항의 공고기간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집단 분쟁조정의 당사자 참가신청을 받으면 제1항의 참가신청기간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참가인정 여부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제30조의11(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보상계획) 법 제33조의4제5항에 따라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권고의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30조의12(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

①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된 후 제30조의7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이용자는 당사자에서 제외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30조의7

<신 설>

제31조(조정의 거부 사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3. (생략)

4.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

5. ~ 6. (생략)

7. 그 밖에 신청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인정되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에 대하여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고 나면 그 후 당사자 중 일부가 같은 조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외됨으로써 같은 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더라도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의13(집단분쟁조정을 위한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단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장이 정한다.

제31조(조정의 거부 사유) -----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5. ~ 6. (현행과 같음)

7.-----

----- 위배되는 등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신 설>

인정되는 경우로서,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장이 정하는
경우

제31조의2(분쟁조정 신청 사실 등의 통지)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의 소
제기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분쟁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受訴法院)에
알리고 소송절차 중지 여부를 문의
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분쟁조정 신청일

3.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소송사건의 번호

② 분쟁당사자는 법 제34조 제2항
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중지된 사건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

법원에 알려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2. 조정절차의 종료 사유

3. 조정의 결과(조정이 성립하거나
직권조정결정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4. 소송사건의 번호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연 락 처	044 - 203 - 2586